

## 6. 建設技術管理法施行規則中 改正令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3-13號 1993. 1.25

### 1. 개정이유

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이 1992년 12월 26일 공포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책임감리자의 자격기준 및 감리자의 상주방법을 정하고 기타 감리 회사의 등록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골자

가. 건설공사감리의 책임감리자를 기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당해 분야 10년 이상 근무하고 재단법인 한국건설기술교육원에서 3주 이상 공사감리와 관련된 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국가·지방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사의 임직원으로서 공사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자등으로 규정함으로써 책임감리자의 감리기술능력이 확보되도록 함.

나. 현재에는 공사현장에 상주하게 되는 감리자수는 책임감리자를 포함하여 시공감리의 경우에는 3인 이상, 전

면책임감리의 경우에는 5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감리회사가 감리계약과 동시에 전체적인 감리자의 수와 공사진도에 따른 감리자의 배치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케 하여 발주관서의 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합으로써 현재의 경직된 감리자의 배치기준을 공사진도에 따라 감리회사 및 발주관서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.

다. 감리회사의 등록시와 등록사항 변경시 대표자·임원의 이력서, 보유기술자중 고급기술자를 제외한 일반기술자의 이력서 및 신원증명서등 불필요한 구비서류의 제출을 간소화함으로써 행정간편화 및 민원소지를 줄임.

### 3. 의견제출

이 개정규칙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(16절지

를 세워서 작성)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성명), 전화번호 및 주소

다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부 기술감리담당관실(전화 503-733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주택건설 2백만호 앞당겨진 내집마련**